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교칙 (벌칙에 관한 부칙)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이하 한글학교라 칭함)에서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이를 해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칙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 부칙은 학생들의 한글학교내 행동에 관한 것으로 학교의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한글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를 알리고, 이러한 기대가 어긋날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를 기술한다.

한글학교의 모든 학생은 (1) 안전해야 할 권리, (2) 안전하게 느낄 권리, (3) 배울 권리가 있다.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고유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학생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교사,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는 행위, 예를 들면 싸움, 밀치기, 물건을 던지기, 물건이나 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한글학교 교사에게 보고되며 학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교사는 학생의 이러한 행위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교사들에게도 알린다. 학부모-교장의 면담이 있게 되며 그 결과를 담당 교사에게 통지한다.
- (2)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한다. 예를 들면 욕하기, 헐뜯기, 겁주기, 왕따, 성적 희롱, 싸움, 싸움을 유도하는 행위등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모든 행위는 곧바로 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보고된다. 학부모-교장의 면담이 있게 되며 두번이상 이러한 행위로 적발되는 학생은 **4주간 정학 처분한다.**
- (3) 한글학교에 장난감 칼, 장난감 총등을 소지하고 오는 학생은 **경고없이 즉시 4주간 정학 처분한다.** 학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이 통지되며 담당 교사는 문서로서 징계에 관한 경위를 기록한다.
- (4) 한글학교에 칼, 총, 날카로운 물체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 오는 학생은 **경고 없이 즉시 퇴학 처분한다.** 학부모는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통지되며 담당 교사는 문서로서 징계에 관한 경위를 기록한다. 이 경우, 학생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퇴학된 학생은 향후 한글학교의 입학이 금지된다.

2010년 3월 6일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교사회의에서 인준됨.